

보도자료

2010년 8월 19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과장(2410)

2010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(첨부 참조)

-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·기준 및 시청점유율 사후규제 방안 마련,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< 추진 경과 >

- '10. 6. 11. :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
- '10. 6. 16.~7. 7. :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
- '10. 7. 9. : 자체 규제심사
- '10. 7. 22, 8. 12. :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

〈첨부〉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①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(신설,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)

- 시청점유율 산정기간,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합산기준, 시청점유율 조사 시 고려사항을 규정
 -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시 일간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 매체특성,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함

②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적용 기준 마련(신설, 제52조의5)

-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(방송사업 소유제한, 방송광고시간 제한, 방송시간 일부 양도) 적용 기준을 마련
 - 방송사업 추가 진입 금지는 추가적인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시청점유율 30% 초과 시 바로 적용하도록 함
 - 방송광고시간 제한은 법 위반으로 인한 방송광고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시청점유율 30% 초과 시 바로 적용하도록 함
 - 방송시간 일부 양도와 방송사업 주식 또는 지분 매각은 시청점유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므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

③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사업 소유제한(신설, 제52조의6 및 7)

- 방송사업 소유제한 유형으로 신규 방송사업 진입 금지,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추가 소유 금지,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 조치로 정하고,
 -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대상은 전년도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시청점유율 초과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범위로 매각 대상 기준을 명확화

④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(신설, 제52조의8)

-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1% 초과 당 매월 하루 주 채널의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방송광고시간 제한 기준을 정함

⑤ 시청점유율 위반에 따른 방송시간 양도(신설, 제52조의9부터 제52조의11)

-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의 시청점유율 1% 초과 당 주 채널에서 주 시청 시간 방송시간의 1/30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
 - 방송시간을 양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고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참여를 배제

⑥ 방송광고 건수 규제 개선(제59조)

- 중간광고·토막광고에서 광고회수와 광고건수를 동시 규제하는 것에서 건수 규제를 삭제

⑦ 외주제작 편성비율 기준 및 1개 국가 외국제작물 의무편성 비율 기준을 '반기'로 조정(제58조)

- 외주제작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 비율 기준과 1개 국가 외국 제작물의 편성비율 기준을 '분기'에서 '반기' 단위로 변경

⑧ 편성비율 산정시간 기준 등의 고시 위임 근거 마련(제50조)

- 방송 프로그램 분류 기준에 대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

□ 향후 일정

- 법제처 심사 : '10년 8월 중
- 차관·국무회의 : '10년 8월 말